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사용종료 신고서
[] 폐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매립시설: 100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종류	규격 (능력)	설치 승인 · 신고 또는 허가일	사용 개시 일	사용종료 (폐쇄) 예정일	매립시설인 경우		
					승인 · 신고 또는 허가 면적(㎡)	사용종료 면적(㎡)	매립량(㎡)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신고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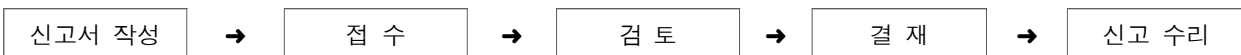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 사용종료, []폐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